

# 프로페셔널리즘의 보수교육

일본계리사회(FIAJ)의 대처

---

YOSUKE FUJISAWA  
FIAJ, CERA, CERTIFIED PENSION ACTUARY

# 자기소개: Self-introduction

- 이름: 요스케 후지사와
- 약력 :
  - 2000년 스미모토 신탁은행 ( Sumitomo Trust & Banking ) 입사
  - 2000년 스미모토 신탁은행 ( Sumitomo Trust & Banking ) 입사
  - 2010년 University of Waterloo, Master Degree 취득
  - 2011년 라이프넷 ( Lifenet Insurance Company ) 입사
  - 2014년 RGA Reinsurance Company 입사
  - 2017년 Swiss Reinsurance Company 입사 ( 현 )
  - 2018년부터 와세대 대학 출강( 현 )
  - 2019년부터 사회보장심의회 기업연금·개인연금위원회 위원 ( 현 )
- 전문분야 :
  - 기업연금, 공적연금, ERM, 생보상품, 사망률, 데이터분석 등

# 기업윤리: Corporate ethics

## 2015년

- Subject: 스페이스셔틀 · 챌린저호 폭발사고
- Why: 기술자윤리            ≡            계리사의 윤리
- How: 간단한토론
- Outcome: 프로페셔널리즘을 생각하게 된 계기

### Discussion

- 옆, 또는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, 2~3명과 토론
- 처음에는 간단한 자기소개 실시
- 두 개의 입장에서 토론
  - Engineer: 엔지니어의 입장
  - Management: 경영자의 입장

# 기업윤리: Corporate ethics

## 2016년

- **Subject: 거대조직 내 공학기술자의 윤리적책임 : 핀토사건**
- 핀토: 1970년~1980년 Ford社가 생산한 소형차의 명칭
  - Ford社는 일본이나 독일 자동차업체와 비교했을 때 후발조에 속함
  - 당시 부사장은 사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형차 개발
  - 핀토는 비교적 낮은 속도로 후방 충돌할 경우 연료가 새고, 인화하기 쉬운 구조였음. 엔지니어들은 제조 전, 충돌실험을 통해 그 사실을 발견 하였으나 경영자들은 엔지니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표
  - 사고피해자들은 Ford社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기
- Why: 기술자윤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≙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계리사의 윤리
- How: 간단한토론
- Outcome: 프로페셔널리즘을 생각하게 된 계기

# 조직과의 충돌: Conflict

---

## 2017년

- 과거 2년 케이스스터디에서 공통으로 보여지는 것은 개인의 책임과 조직의 책임 사이에서의 갈등
- 본 훈련의 목적: 전문직으로서의 개인의 책임과 자신의 조직과의 책임 사이에 충돌에 관해 주변 이해관계자를 도식화 함으로써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지 인식
- 이해관계자
  - Principals ( 의뢰자 혹은 고용주 ) : 주주, 채권자, 보험계약자, 기업연금의 모체기업 등
  - Agency: 대표이사, 관리직, 감사부, 감사법인 등
  - Controlling: 일본계리사회, 생보협회, 금융청 등
  - Advisory: 컨설팅회사, 변호사, 등급기관 등

# 공인회계사의 윤리: CPA ethics

## 2018년

- 공인회계사의 윤리규칙을 이용한 토론

### 회계 사무실 등 소속회원

- 감사법인, 회계사무소 등에 소속된 회원 (제공하는 전문업무는 불문)

### 기업 등 소속회원

- 기업, 행정기관, 교육기관, 비영리법인/ 본회 등에 고용, 기타 계약에 의해 해당 기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, 혹은 기업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고 있는 회원

의뢰인 ≙ 고용주

의뢰인 = 고용주

# Contents of Discussion

## ❖ 논점

- 「개념적 프레임워크 접근방법 (Conceptual Framework Approach)」 내 「저해요인 (threats)」에 해당하는 것이 계리사에게도 존재하는가 / 존재하지 않는가

## ❖ 계리사의 경우

Consulting actuary	In-house actuary
○ 주 의뢰인* ≒ 고용주	○ 주 의뢰인* = 고용주

- 현재, 과거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쪽의 입장인지 명시 후 토론

❖ 의뢰인이란, 「그 전문업무를 실시하는 계리사를 선택, 업무의 결과를 직접 이용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(계리사 행동규정에서 발췌)」

# 개념적 프레임워크 접근방법: Conceptual framework approach

---

1. 기본원칙준수를 저해하는 요인(threats)을 인식
2. 인식한 저해요인의 중요성(materiality)정도를 평가
3. 기본원칙준수를 저해하는 요인의 중요성의 정도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됐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여 저해요인을 제거하거나, 혹은 그 중요성의 정도를 허용가능한 수준까지 경감
4. 저해요인이 매우 중대하거나 저해요인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전문업무를 중단, 혹은 필요에 따라 의뢰 인과의 계약을 해제/ 고용주와의 관계를 종료
- 5 \* 기본원칙을 '계리사 행동규범으로 바꿔 읽는다

# 저해요인: Threats

---

## 1. 자기이익 (Self-interest)

- 금전적, 기타 이해관계 따라 계리사의 판단이나 행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

## 2. 자체검토 (Self-review)

- 계리사가 전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, 해당 계리사 자신, 혹은 다른 계리사가 과거에 행했던 것을 판단, 또는 제공하고 있는 업무의 결과들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

## 3. 옹호 (Advocacy)

- 계리사가 전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이 훼손될 경우, 의뢰인 혹은 소속 조직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

❖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윤리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강연을 위한 예시로서만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# 저해요인: Threats

---

## 4. 공모(familiarity)

- 계리사가 의뢰인 또는 고용주와 장기적인 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계리사가 이들의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, 혹은 그들의 업무를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

## 5. 위협 (Intimidation)

-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이나 잠재적인 압박 때문에 계리사가 부당한 영향을 받아 공정하게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

❖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윤리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강연을 위한 예시로서만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# 1. 자기이익: Self-interest

Consulting actuary	In-house actuary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컨설팅회사들은 특정 의뢰인들의 보수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</li> <li>◦ 계리사가 소속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등의 계리사가 이전에 수행한 전문업무의 결과를 평가할 때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는 것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소속된 기관의 주식 등의보유, 소속된 조직으로부터의 대출 또는 보증을 받게 되는 것</li> <li>◦ 고용 지속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</li> </ul>

❖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윤리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강연을 위한 예시로서만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## 2. 자체 검토: Self-review

Consulting actuary	In-house actuary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컨설팅팀의 계리사가 의뢰인에게 고용되어 주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거나, 최근까지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것</li> </ul>	

❖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윤리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강연을 위한 예시로서만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# 3 . 옹호: Advocacy

Consulting actuary	In-house actuary
	<p>소속된 조직의 목표, 목적을 적법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등에 소속된 계 리사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 지 않을 정도의 진술을 하는 한, 소속된 조직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은 옹호에 해당하지 않음.</p>

- ❖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윤리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강연을 위한 예시로서만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## 4. 공모: Familiarity

Consulting actuary	In-house actuary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계리사가,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응답, 혹은 접대를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것</li> <li>◦ 주요관리자가, 컨설팅 업무에 장기간 관여하는 것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소속된 조직에서 허용된 청탁 또는 접대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허용범위를 넘는 것</li> <li>◦ 의사결정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처와 오랫동안 교제가 이끄는 거</li> </ul>

❖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윤리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강연을 위한 예시로서만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## 5 .위협: Intimidation

Consulting actuary	In-house actuary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컨설팅회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압력을 받는 것</li> <li>◦ 의뢰인이 보수를 덜 지급하기 위해 컨설팅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좁히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</li> <li>◦ 의뢰인이, 특정사항에 관해 보다 높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리사가 그 판단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수리 계산상의 전제 등에 뜻/견해가 다른 경우에, 기업에 소속된 계리사가 해고되거나 재배치가 될 우려가 있는 것.</li> </ul>

❖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윤리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강연을 위한 예시로서만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# Contents of Discussion

## ❖ 논점

- 「개념적 프레임워크 접근방법 (Conceptual Framework Approach)」 내 「저해요인 (threats)」에 해당하는 것이 계리사에게도 존재하는가 / 존재하지 않는가

Consulting actuary	In-house actuary
○ 주 의뢰인* ≒ 고용주	○ 주 의뢰인* = 고용주

## 토론진행방법

- 옆사람과 10분정도 논의 (2~3명)
- 도입 : 간단한 자기소개
- 현재 및 과거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입장을 명시
- 모든 저해요인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과 관련된 예시들 위주로 논의

# 마지막으로

---

## ❖ IAJ의 프로페셔널리즘의 보수교육

- 2016년 : 거대조직내 공학기술자의 윤리적책임: 핀토 사건
- 2017년: 조직과의 갈등(충돌)
- 2018년: 공인회계사의 윤리규칙을 이용한 토론

## ❖ IFoA의 프로페셔널리즘 보수교육@Life Conference

- ❖ 이번 발표가 IAK의 프로페셔널리즘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